

제·개정이유서

□ 행정규칙명

-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

□ 제·개정 이유

-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, 고시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가.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

-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 ($40\text{L}/\text{m}^2 \rightarrow 20\text{L}/\text{m}^2$)
- "군부대 오수량 산정연구("23.2)" 결과를 반영하여 군대숙소의 오수량 산정기준을 인원 기준으로 변경($7.5\text{L}/\text{m}^2 \rightarrow 300\text{L}/\text{인}$)

나. 규제 개선

-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제조·가공 주요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,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용도 적용 ($15\text{L}/\text{m}^2 \rightarrow 5\text{L}/\text{m}^2$)
- 건축물 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, 공조실,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

다.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

-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
- 「유통산업법」에 따라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 등)의 적용 대상을 매장면적 합계 3천m^2 이상인 경우로 한정